

의안번호	2206022
의 퇴 인	허성무의원
회 답 일	2024.12.19.
추 계 번호	24E547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중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사용분에 대한
소득공제율 상향조정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6조의 2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○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소상공인간 편결제시스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%에서 40%로 상향조정 －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그 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용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결제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결제수단(이하 “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)의 이용 금액의 합계액(이하 “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40% 소득공제율 적용	조세 지출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6조의2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대상 항목 중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,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자 중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(결제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사용분)

사용자 수, 이들 개개인의 연간 총급여액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상세정보 필요

-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%에서 40%로 상향조정 시 소득공제금액 증가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현행 기본 30%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지만, 사용처에 따라 더 높은 공제율 적용 가능(예: 전통시장에서 사용 시 40%의 소득공제율 적용)
- 신용카드 공제항목의 추가 또는 공제율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의 변화는 개인의 소득규모별 기본공제 한도, 기본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공제대상금액, 이중 추가공제 가능 금액(한도 초과분과 대중교통·전통시장 및 도서·공연비 등 공제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)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개인별 총급여액, 공제항목별 신용카드 등 사용분,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등에 대한 자료 필요

□ 그러나 개인별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결제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지불한 사용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,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

-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자를 총급여규모별(13개 소득구간)로 구분하여 신용카드 공제항목별(대중교통, 전통시장, 도서·공연 등, 현금영수증, 직불카드 등, 신용카드) 사용분을 집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, 해당자료만으로는 비용추계 불가
 - 현행 체크카드 사용분, 간편결제시스템(서울페이, 제로페이 등)을 통한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분 등이 소득공제 적용 시 직불카드 등 사용분으로 집계(전통시장에서 사용 시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40% 공제율 적용)됨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직불카드 등 사용분에서 결제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지불한 사용분이 구분되어야 하지만 이를 구분할 수 없음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요, 2024년 기준

제도	항목	공제제도
소득공제율	· 신용카드	15%
	·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	30%
	· 도서·신문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영화 관람료('도서 등') 사용분	30%
	· 전통시장 사용분	40%
	· 대중교통 사용분	40%
	·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¹⁾	10%
소득공제 한도	· (기본) 총급여 7천만원 이하	300만원
	· (기본) 총급여 7천만원 초과	250만원
	· (추가) '도서 등', '전통시장', '대중교 통' 사용분	300만원 추가 (*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)
	·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¹⁾	100만원
일몰 기한		2025.12.31.

주: 1) 2024년에 한하여 2024년 사용액이 2023년 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, 5% 초과
사용분에 대해 10% 공제율 추가 적용(공제한도 100만원)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